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0
------	------

제출일자 : 2021.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의 위임 근거 조항이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되어 반영함(안 제1조)
- 나.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인에서 18세이상 주민 150인으로 조정함(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1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20일간): 별도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첨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19세이상 주민 200”을 “18세이상 주민 1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6조</u>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21조</u>----- ----- -----.</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u>지방자치법 제16조</u>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u>19세 이상 주민 200인</u> 이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u>지방자치법 제21조</u>----- ----- ----- -----<u>18</u>세 이상 주민 <u>150</u>-----.</p>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 조은아
연 락 처	2627-1173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1916. 12. 30.>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시행2022.1.13.)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